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11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한창민·한정애·박홍근

장경태 · 강득구 · 김준혁

황운하 · 김재원 · 양문석

문정복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이 극도의 사회질서 교란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 통제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계엄 시행 중 국회의 기능보장이나 본회의 개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위법한 계엄의 선포나시행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장 폭동 등으로 국가안보가 실질적으

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은 계엄 조치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한편,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계엄을 선포·시행한 경우 이에 가담한 대통령, 국무위원 등은 무기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 록 함으로써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의 기 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특히 현행 계엄법 제9조제1항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있음.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거주·이전', '단체행동'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음. 그러나 현행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헌법상 근거 없이 '거주·이전', '단체행동'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거주·이전', '단체행동'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거주·이전', '단체행동'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삭제함.

또한 현행 계엄범 제9조제1항은 특별한 조치의 내용의 한계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바, '제한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특별한 조치를 하 기 위하여 사전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를 "무장 폭동, 반란, 전시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하여 국가안보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어"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의2(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동의)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엄을 선포한 지 24시간이 되는 때로부터 계엄 선포는 효력을 상실한다.
 - ③ 국회의장은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회법」 제73조의2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제1항 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제한적으로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하

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고, 사전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3조(국회의 기능 보장 등) ①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입법 권은 보장되며, 국회의장은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회법」 제73조의2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의 방식 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 ②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③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조치를 근거로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이 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계엄을 선포하거 나 시행한 경우 이에 가담한 대통령·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은 무기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현행과 같음) (생 략)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② -----무장 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폭동. 반란. 전시의 군사적 위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협으로 인하여 국가안보가 실 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어-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 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 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 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조의2(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신 설> 동의)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 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 를 받지 않은 경우 계엄을 선 포한 지 24시간이 되는 때로부 터 계엄 선포는 효력을 상실한 다. ③ 국회의장은 본회의가 정상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
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
포・구금(拘禁)・압수・수색・
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
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 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회법」 제73조의2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할수 있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
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제
한적으로 체포·구금(拘禁)·압
수·수색·언론·출판·집회·
결사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
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
하고, 사전에 국회 재적의원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국회의 기능 보장 등) ①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의 입법권은 보장되며, 국회의 장은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회법」 제73조의2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②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③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조치를 근거로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 니한다. 제14조(벌칙) <신 설> 제14조(벌칙) ① 이 법에 따른 요 건 및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계엄을 선포하거나 시행한 경 우 이에 가담한 대통령・국무 총리 및 국무위원은 무기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 ④ (생 략) ② ~ ⑤ (현행 제1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